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0. 17(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10. 1.

나. 제안자 : 이강호, 장현근, 차준택, 이용범, 안영수, 박종우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10. 1.

라. 상정일자 : 2014. 10. 14.(제2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이강호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가. 각급 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 기준면적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최소 기준면적의 체육장(옥외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체육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임

나. 이러한 각급 학교의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 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교육감은 매년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구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7조)
- 마.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한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최소 기준면적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강호 의원 등 6명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는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며,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 우선배정 및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정함.

- **안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에 노력하도록 정함.
- **안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는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는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종합 검토의견

- 2007년 5월 2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이유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사(校舍) 기준면적을 일정 범

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형 학교 및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학교의 체육장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되었는바, 각급 학교의 협소한 체육장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의한 체육장에 포함하는 사항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어 안 제5조의 학교별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파악 등에 문제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구분	체육장에 포함되는 사항	비고
평생교육체육과	운동장, 체육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교육시설과	운동장, 체육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과 <u>스탠드, 구령대, 음수대, 실외광장 등 체육활동에 필요한 옥외공간을 모두 포함</u>	

-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의 체육장 기준면적은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는바 학교 신설 및 재배치 시 주변여건에 따른 향후 학생수 증가 추이 등 장기적인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 대지 및 체육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 더불어 안 제7조 제2항 하단에 계획 및 대책 수립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별도의 불이익”이란 포괄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본 조례가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학교 체육시설이나 교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리라 여겨짐.

(질의) 학교 체육시설이나 교구 확보를 하려면 학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답변) 신설학교는 신설학교 개교 경비로 충당하고 유지보수비는 학교 운영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학교,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예산확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답변)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7명)

7. 기타사항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장의 설치 기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학교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

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